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43

발의연월일: 2021. 5. 28.

발 의 자: 강준현·홍성국·박상혁

전용기・허 영・조응천

홍기원 · 신영대 · 김윤덕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 보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중 영업용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선 지자체의 법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 및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물류창고업에 대해서는 형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21조의9 등).

법률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로,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제2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10(종전의 제21조의9)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의10(준용규정)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창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 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 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제21조의9"를 각각 "(제2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8조"를 "제21조의9"로 한다.

7의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의3을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	제18조(과징금) ①
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u>제17조</u> 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	<u>다)의 어느 하나</u>
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	
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u>1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1억원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까지 내지 아니하면 <u>국토교통부</u>	따라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
<u>장관은 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바	<u>부기한 대통령령</u>
에 따라 국세 <u>체납처분</u> 의 예에	<u>강제징수</u>
따라 징수한다.	<u>.</u>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	
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	
등록 또는 신고 •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 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1. (생략)
-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 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 업
- 3. (생략)
- ⑤ (생략)

<신 설>

	-
	_
1. (현행과 같음)	
2. 「화학물질관리법」	_
	_
	_

- 3.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 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 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 (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 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 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 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 도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그 밖 제21조의9(준용규정) 제8조 및 제 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 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 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 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 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제21조의10(준용규정) 제8조, 제1 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9조 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제21 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 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물류터미 널"은 "물류창고"로, "국토교 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 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 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해 제62조(청문)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 2. (생략)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 은 "제21조<u>의2제1항"으로, "제</u> 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 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 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 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 회"로 본다.

> 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 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 는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 다.

•
<u>.</u>
1(제21조의10
1의2.・2. (현행과 같음)
NG/조(권하이 의이) ①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 3. (생략)
- 4. 제14조제2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 승계의 신고수리
- 5. 제15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및 제15조제2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 6. 제17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

<u>시·도지사 또</u>
<u>는 소속기관의 장</u>
1. ~ 3. (현행과 같음)
4(제21조의10
5(제21조의10
(제21
조의10
6(제21조의10
<u> </u>

최소	ΠJ	사업정	ス)
7111	ᅮ	^^[급 ' 꿈	

7. 제18조(제21조의9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및 징수 <신 설>

8. ~ 16. (생략)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 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 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생략)
- 2. <u>제21조의9</u>에서 준용하는 제1 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 리
- 3. <u>제21조의9</u>에서 준용하는 제1 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7. <u>제18조</u>
7의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 16.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의10</u>
3. <u>제21조의10</u>

- •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4.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 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 5.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 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 9. (생 략)
- ③ ~ ⑤ (생 략)
-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6조(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

_
4. <u>제21조의10</u>
5. <u>제21조의9</u>
6.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4(제21조의10

른 사람에	게 사용	홍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생략)

4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 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 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 5. ~ 7. (생략)
- ②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2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 2. (생략)
- ③ (생략)

					 	-	_	_
				_				
4의2.	(현행괴	- 깉	남음))				

- 5.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제21	<u> 조의10</u>	
_				
_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